



감사원 고발

제 목 감사관 채용 면접시험에 부당 개입하여 순위 변경

피고발인 성명: N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근무처: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발건명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발 사실

1. 사건 개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감사행정의 독립성 ·

전문성 · 청렴성 확보 등을 위해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충원하고자 2022. 6. 24.

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 공고를 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A 등 7명¹⁾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과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9. 1. A를 감사관으로 임용하였다.

한편, 일자별 임용과정을 보면 위 관서는 2022. 7. 26. 인사위원회 위원장(부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감사관(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위원 위촉 및 면접시험 문제 출제 요청” 문서에 따라 시험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대학교 교수 J 등 5명²⁾의 평가위원이 2022. 7. 28. 1차 서류전형, 2022. 8. 9. 2차 면접시

1) D, E, F, G, A, H, I 총 7명이 감사관 채용 원서를 제출하였으나 2차 면접시험에는 F와 I가 불참하여 5명만 응시

험을 실시하여 응시자 중 상위 2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한 후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였고, 2022. 8. 10. 인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³⁾한 후 같은 해 8. 11.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추천하여 교육감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였다.

특히, 2차 면접시험에서는 5명의 평가위원이 전문가적 능력 등 5개 항목⁴⁾의 문제(항목별 20점, 총 100점)를 응시자에게 질의하여 평가하고, 위 관서에서 평가위원의 면접시험 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를 수합·집계하여 응시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나머지 3명의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나온 점수로 상위 2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 ~~과~~과 인사담당 N은 2022. 7. 8.부터 위 부서 위 직에 근무하면서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 시험위원회 간사⁵⁾로 참석하여 2022. 7. 28. 1차 형식요건심사인 서류전형, 2022. 8. 9. 2차 적격성심사인 면접시험을 주관하였으며, 2022. 8. 10. 인사위원회 간사로 ‘감사관 임용후보자 우선순위 추천’ 안건을 상정하고, 임용권자인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감사관(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추천 및 최종합격자 결정” 문서를 검토·상신하는 등 감사관 채용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3. 2. 6.~4. 14.) 중 감사관 채용 2차 면접

2) 시험위원회 위원은 2022. 7. 26. 개최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외부위원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과장~~ K, 전라남도교육청 나주공공도서관 ~~부장~~ L, 전남대학교 ~~교수~~ M, ~~대~~대학교 ~~교수~~ J 4명이 선정되었고, 내부위원은 당시 ~~중학교~~ 교장 B가 선정되었으나, 내부위원인 교장 B는 2차 면접시험 전에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여 예비후보인 ~~과장~~ C가 2차 면접시험에 참여

3) 인사위원회에서 통보받은 후보자 중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명만 임용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면접항목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5개 항목으로, 항목별로 3개의 하부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요소의 배점은 6~7점으로 하(0점), 중(1 또는 1.5점), 중상(3점), 상(4.5 또는 5점), 최상(6 또는 7점) 등 5단계로 구분

5) 공식적으로 간사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험위원회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의 시나리오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평가위원에게 평가방법을 설명하는 등 간사 역할을 하였음

시험 추진 과정을 감사한 결과, N은 2차 면접시험에서 5명의 평가위원이 A 등 5명의 응시자를 평가한 후 서명하여 제출한 평정표의 점수를 집계한 결과에서 1971년생인 H가 2위인 것을 확인하고 평가위원들에게 나이가 많은 3위 A를 선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평정표의 점수를 수정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A의 순위를 2위로 상향 변경시킴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A가 최종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경연 등에 대한 심사위원의 채점 종료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명시적인 심사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심사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절차와 심사방식 전체를 살펴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험칙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참가자의 경연을 독립적·주관적으로 평가하고 100점을 최고 점으로 하여 개별 채점표에 점수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집계위원에게 전달하였다면 채점 종료 시점은 심사위원이 개별 채점표에 서명하여 집계위원에게 전달한 때이고 그 이후에는 오기 정정, 착오에 의한 정정 등 이외에는 점수 변경이 불가하다.⁶⁾

그러므로 평가위원이 독립적·주관적으로 평가한 후 채점·서명하여 평정표를

6)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66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1714 판결 등 참조

관리요원에게 제출하고, 관리요원이 면접시험 점수를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오기 정정 등 이외에는 점수 변경이 불가하다.

따라서 감사관 채용 면접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부터 채점·서명한 평정표를 제출받아 평가결과를 집계함으로써 평가가 종료되었는데도 그 이후 평가위원에게 순위 변경을 요청하여 평가결과를 변경하는 행위는 감사관 채용 면접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임용후보자 적격자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범죄 혐의

N은 2022. 8. 9. A 등 5명의 응시자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면접이 끝난 후 평정표 집계를 담당하는 O⁷⁾로부터 평가위원이 채점·서명하여 제출한 평정표를 공용노트북의 엑셀서식에 입력·집계한 면접시험 점수 및 순위를 보고받았다.

그런데 N은 2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 면접시험 평가결과 관리번호 3번인 1971년생 H가 합계점수 230점(평균점수 76.67점)으로 2위, 관리 번호 2번인 1958년생 A가 합계점수 221.5점⁸⁾(평균점수 73.83점)으로 3위인 것을 확인하고 O와 P를 면접시험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⁹⁾ 평가위원들에게 “평가 결과가 1위는 관리번호 4번인 G(1962년생), 2위는 관리번호 3번인 H(1971년생)로 나왔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과장들이 대부분 1966년생이고 감사관이 국

7) O는 ~~■~~과 직원인 P와 함께 면접시험장에 들어가서 평가위원들이 제출한 평정표를 교차 검증한 후 공용노트북의 엑셀서식에 입력하여 집계함

8) 61.5점(J의 점수)+74점(K의 수정 전 점수)+86점(L의 점수)=221.5점(최저점수인 M의 수정 전 점수 56.5점과 최고점수인 C의 점수 96.5점은 제외)

9) O는 N에게 면접시험 평가결과 A가 3위라는 것을 알려 준 후 N의 지시에 따라 면접시험장을 나갔다고 진술한 반면 N은 O 등을 면접시험장에서 나가게 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A가 3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

장급(3급)이며 학교장들 또한 연령이 60대에 근접한 분들이어서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3위인 A(1958년생)를 선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평가위원 중 M이 평정표 수정이 가능하냐고 N에게 물어보자 N은 가능하다고 답변하고서 M이 수정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O를 들어오게 하였고, M은 A의 평정표를 O로부터 돌려받아 A의 평정표 점수 중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 3개 요소¹⁰⁾의 채점 결과를 중상(3점)에서 최상(7점)으로 각각 수정하여 당초 A의 점수 56.5점을 68.5점으로 총 12점을 높였다.

위와 같이 M이 수정한 점수를 O가 엑셀서식에 수정입력하였는데도 A의 합계점수가 228.5점¹¹⁾(평균점수 76.17점)으로 여전히 3위로 나타나자, N은 평가위원 K에게 또다시 평정표 수정을 부탁하여 K가 A의 평정표를 돌려받아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요소의 채점 결과를 중상(3점)에서 최상(7점)으로 4점 높게 수정하여 A의 점수를 74점에서 78점으로 4점 높였고, 그 결과 A의 합계점수가 232.5점(평균점수 77.5점)으로 순위가 2위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이후 N은 A의 순위가 2위인 것을 확인하고 O에게 평가위원의 평정표 점수를 평정표 집계표에 수기로 작성하여 서명을 받도록 하였고, 평가위원들이 관리번호 4번인 G가 평균 84.5점으로 1위, 관리번호 2번인 A가 평균 77.5점으로 2위, 관리번호 3번인 H가 평균 76.67점으로 3위인 평정표 집계표에 서명함으로써 감사관

10)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11) 68.5점(M의 수정 후 점수)+74점(K의 수정 전 점수)+86점(L의 점수)=228.5점(최저점수인 J의 점수 61.5점과 최고점수인 C의 점수 96.5점은 제외)

임용후보자로 G와 A가 선정되었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에서는 시험위원회로부터 면접시험 결과 당초 3위였다가 2위로 변경된 A를 포함하여 2명의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아 그대로 교육감에게 추천¹²⁾하였으며, 임용권자인 교육감은 인사위원회로부터 2위로 추천받은 A를 최종 선정함으로써 2022. 9. 1. A가 감사관으로 임용되었다.

따라서 N은 「지방공무원법」 제42조를 위반하여 감사관 채용 면접시험과 감사관 임용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83조(별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다.

12) N은 ~~사회~~과장, ~~국~~국장, 부교육감 등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임용후보자 우선순위 추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할 때 A의 순위 변경 행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A가 당초 임용후보자 2순위 안에 들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검토 및 심의